

지하철 역사 유휴공간 창업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00
------	------

2016. 3. 3.  
기 획 경 제 위 원 회

## I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2월 11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6년 2월 15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16.3.3.)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 II . 제안설명의 요지(일자리노동국장 유연식)

### 1. 제안이유

- 시민에게 다양한 창업문화를 전파하고, 창업가에게 아이디어 상품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창업카페를 설립하였으며,

- 해당 카페의 운영을 창업 전문성, 노하우,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 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 시설명 : (가칭) 창업카페
- 소재지 : 지하철 7호선 송실대입구역 지하5층
- 시설규모 : 116㎡ (약 35평)
- 공간구성 : 제품촬영실, 홍보물 제작 및 개방형 창업공간, 창업상담실 등
- 위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나.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 (2016.4.1. ~ 2019 .3.31.)
- 위탁사무 : 창업카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주요사업 추진 (교육, 행사, 홍보 등)
  - 관리 인력 선발 및 운영, 시설물 유지 관리
  - 주변 대학 및 민간 창업지원센터와의 교류·협력 등
- 소요예산 : 연간 200,000천원 ('16년 예산 157,031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신규위탁)

### 다.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

- 청년층의 창업 지원 및 창업활성화를 지원하는 해당 사무는 시민의 권리·의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라 볼 수 없으며

창업관련 전문 지식·보육경험 등이 요구되는 사무

- 창업지원 분야는 민간기관(대학)과의 네트워크 등 창업생태계 형성과 활용이 중요한 바, 직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창업환경변화에 따른 적기 대응과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움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창업문화 전파 및 창업공간의 제공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에 창업카페를 설치하고 해당 카페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카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창업카페 현황 및 운영계획

- 서울시(이하 “시”)는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창업문화를 전파하여 창업활성화를 제고하고, 창업가에게는 프로그램의 운영과 창업공간의 제공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기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이에 따라 시는 민선6기 공약으로 지하철 역사 유휴공간 등을 일자리 거점 및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송실대입구역 제1호 창업카페를 포함하여 2018년까지 총 5개소의

창업카페를 조성할 계획임.

〈표〉 연도별 유희공간 창업센터 조성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조성개소	1개소	2개소	1개소	1개소	
사 업 비	200	687	445	545	

- 기존 지하철 역사 유희상가를 대상으로 창업카페 설치 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지장물 이설 부담이 적고 사무공간 설치가 용이하며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높아 창업카페 설치에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였음.
- 특히, 송실대 입구역의 경우 인근 대학을 포함하여 청년층 창업가의 참여유도가 가능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판단으로 평가됨.
- 당초 시는 창업카페를 창업활동 및 제품 판매를 위한 소규모공간(10㎡, 3평)으로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창업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116㎡(35평)의 공간으로 확대 운영하게 되었으며, 운영형태에 있어서도 지하철 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공익적 사용 공간으로 무상임대하는 경우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당초 검토된 판매기능을 제외하고 창업전문가를 활용한 전문컨설팅 지원프로그램으로 전환하였음.

### 〈 지하철 역사 유희공간 창업카페 운영 현황〉

- 명칭(안) : 서울시 창업카페 제1호
- 개 관 일 : '16.1.11일
- 장 소 :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 지하5층 (116m<sup>2</sup>)
- 운영시간 : 09:00~22:00 (토요일 10:00~18:00, 일요일 휴무)
- 사 업 비 : 200,000천원 ('16년)

※조성비용 179,916천원, 2015년 예산으로 기투입

- 운영인력 (근무인원 5명, 파견인원 3명)
  - 총괄담당(매니저, 1명) : 상담센터 총괄운영, 프로그램 기획, 설계
  - 보조인력(2명) : 방문객 시설이용안내, 회원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상담사(2명) : 창업정보제공, 민·관 지원사업, 대출상담 등
  - 중부기술교육원(파견) : 제품촬영(1명) 및 홍보·디자인 제작지원(2명)

#### ○ 공간구성

구분	인포 & 창업길라잡이	Start-up Zone	제품 촬영	홍보·디자인제작
면적	22m <sup>2</sup> (6.7평)	36m <sup>2</sup> (11평)	36m <sup>2</sup> (11평)	22m <sup>2</sup> / 6.7평
용도	창업정보 및 시설안내 창업컨설팅 진행	예비 창업자 사무공간 지원	제품촬영 및 후보정 작업	디자인 및 인쇄물 제작지원

- 창업카페는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용공간이자 창업문화의 점점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예비창업가들에게 창업상담과 촬영 공간, 디자인 및 인쇄물 제작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홍보에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타 창업관련 공간들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음.

- 시는 창업카페 외에도 이미 서울창업허브, 글로벌창업센터, 대학가 주변 창업거점센터 등 다수의 창업지원공간 제공을 통해 일자리창출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러한 창업지원공간은 각각의 설립취지에 맞도록 차별성을 살리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표〉 서울시 각종 창업지원사업 현황

센터명	위 치	사업비 (단위:백만원)
서울창업허브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16년19,421 (총 44,097)
글로벌창업센터	용산구 한강로3가, 나진상가 14동 전자월드	1,000
동북권창업센터	도봉구 창동 1-8	22,025 (국비11,000포함)
아스피린센터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 구 북부지방법원 신관동	'16년1,407
대학가 주변 창업거점센터	'15년 연세로 선정(시유지), 설계용역 추진 중	'16년200
서울 테크숍	용산전자상가거리(나진상가 15동)	1,016

- 현재 창업카페는 지난 1월 11일 개관 이후 약 250여명의 시민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2015.2.10. 기준), 유동인구나 접근성에 비추어 향후 시민과 예비창업가들의 방문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이 요구됨.

## 다. 민간위탁 타당성 여부

- 지하철 유휴공간 창업카페 조성 사업은 당초 시가 20~30대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성공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챌린지1000프로젝트’의 단위사업 중 하나로 서울산업진흥원(이하 “SBA”)에 관리·운영을 위탁해왔음.
- 그러나 창업지원사업 업무조정을 통한 효율화 계획<sup>1)</sup>를 통하여 창업기업 보육 및 투자연계 사업이 SBA의 고유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챌린지1000프로젝트’ 사업이 201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음.
- 이에 시는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거나, 위탁사무를 두 개 이상의 위탁사무로 분리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 민간위탁 사무 추진절차에 준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동 사업의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절차를 추진하려는 것임.
- 다만, 신규민간위탁기관 선정에는 의회승인, 적격자 심의 등의 절차에 약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sup>2)</sup>에 따라 SBA와 90일 범위에서('16.1.1~3.30) 위탁연장 협약을 체결 후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임.

1) 신규 사업 증대에 따라 창업가 선발·보육 등의 집행 업무는 서울산업진흥원 고유사무로 이관하여 창업지원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창업지원 계획 수립, 서울창업허브 등 지원 인프라 조성, 민간 창업기관 교류·협력 등 정책 사항 및 신규 기반 조성사업은 시(창업지원과)에서 추진함.

2) 제11조(협약체결 등)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 민간위탁 예산 세부내역 〉

(단위:천원)

년 도	사 업 비	산 출 내 역	비 고
2016	2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 건 비 : 95,076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괄담당 : 월 2,839천원×12월=34,068,000원</li> <li>▶ 보조(A) : 월 1,501천원×12월=18,012,000원</li> <li>▶ 보조(B) : 월 1,783천원×12월=21,396,000원</li> <li>▶ 상 담 사 : 월 900천원×2명×12월=21,600,000원</li> </ul> </li> <li>◆ 프로그램 운영비 : 68,924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아이디어 상품 홍보·디자인 제작비 : 28,8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00천원(1건)×3팀(월)×12월=28,800,000원</li> </ul> </li> <li>▶ 간담회 및 포럼개최 : 22,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담회 : 1,000천원(회당)×1회×12월 = 12,000,000원</li> <li>• 포 럼 : 5,000천원×2회(상·하반기) = 10,000,000원</li> </ul> </li> <li>▶ 기타 프로그램 운영비(시제품 전시 등) : 18,124천원</li> </ul> </li> <li>◆ 일반운영비 : 36,000천원 (사무실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3,000천원×12월=36,000,000원</li> </ul> </li> </ul>	

- 창업지원업무의 경우 전문성과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등 창업 생태계의 형성과 활용이 중요한 분야로, 창업환경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과 최신 트렌드 반영,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창업관련 전문성, 노하우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관리·운영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와 함께 현재 근무인원인 5명 중 SBA 직원인 총괄담당 매니저를 제외한 4명의 보조인력에 대한 고용승계문제에 대해서도, 신규 민간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보임.



- 또한, 현재 제품촬영과 홍보·디자인 제작지원을 돕는 파견인력은 SBA와 중부기술교육원간의 업무협약에 의한 교육원생들의 재능기부 참여로 배치되어 있는 사정이 있어, 다른 민간기관에 창업카페가 위탁될 경우 자칫 관련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 위탁기관 선정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무엇보다 창업카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분한 역량과 경험을 고루 갖춘 기관의 수탁기관 선정이 필요하며, 주변 대학의 창업지원센터와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카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신규 민간위탁업체 선정 후에 창업카페에 근무하고 있는 보조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대책은?

답변 (일자리노동국장) : 현재 보조 인력과 상담사 등 4인의 경우 위탁기간인 3월까지 계약되어 있는 계약직으로 새로운 업체 위탁 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질의 : 역사 유휴공간 창업카페 이외에도 다양한 창업지원시설들이 존재하는데, 창업카페가 이들 시설에 비해 효용성은?

답변 (일자리노동국장) : 지하철 역사라는 창업카페의 공간적인 특성을 이용한 차별화된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 창업카페가 개관한지 한 달 동안 250여명의 시민이 방문했다고 하는데, 일반 시민의 방문 외에 실질적인 창업지원을 받는 인력이 얼마나 방문했는지 운용실적은?

답변 (일자리노동국장) : 아직 개관 한달로 많은 시민이 방문하지는 않았으며,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고, 창업지원을 받는 인력의 방문횟수는 향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6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지하철 역사 유희공간 창업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000
----------	------

제출년월일 : 2016년 2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 가. 시민에게 다양한 창업문화를 전파하고, 창업가에게 아이디어 상품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창업카페를 설립하였으며,
- 나. 해당 카페의 운영을 창업 전문성, 노하우,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 시설명 : (가칭) 창업카페
- 소재지 : 지하철 7호선 송실대입구역 지하5층
- 시설규모 : 116㎡ (약 35평)
- 공간구성 : 제품촬영실, 홍보물 제작 및 개방형 창업공간, 창업상담실 등
- 위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나.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 (2016.4.1. ~ 2019.3.31.)
- 위탁사무 : 창업카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주요사업 추진 (교육, 행사, 홍보 등)
  - 관리 인력 선발 및 운영, 시설물 유지 관리
  - 주변 대학 및 민간 창업지원센터와의 교류·협력 등
- 소요예산 : 연간 200,000천원 ('16년 예산 157,031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신규위탁)

## 다.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

- 청년층의 창업 지원 및 창업활성화를 지원하는 해당 사무는 시민의 권리·의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라 볼 수 없으며 창업관련 전문 지식·보육경험 등이 요구되는 사무
- 창업지원 분야는 민간기관(대학)과의 네트워크 등 창업생태계 형성과 활용이 중요한 바, 직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창업환경변화에 따른 적기 대응과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제63조(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지원)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5.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센터 운영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18조 제2항 1호 ~ 3호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18조(일자리 지원시설)

② 시장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창업 보육공간 지원,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창업 자금 및 전시·판매장 등 마케팅 지원
3. 그 밖에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16년 예산편성 및 2017년 예산편성 요구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창업지원과 창업정책팀 이후락 (☎ 2133-5511)